

#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 수정공고 안내

- 코로나 감염증 확산상황 및 연휴기간 등으로 인한 당첨자 검수 제한기간 내 등기우편 발송 및 당첨자 대상 정당계약일 내 방문 등 고객의 안전과 주택전시관 운영에 우려가 있어 분양일정은 변경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검수 및 계약일정을 변경하여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정정하오니, 아래 변경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당첨자 서류검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만 해당)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계약체결 방문예약제)	당첨자 서류검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만 해당)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계약체결 방문예약제)
2021.02.24(수) ~ 2021.03.07(일)	2021.03.08(월) ~ 2021.03.14(일)	2021.03.02(화) ~ 2021.03.11(목)	2021.03.12(금) ~ 2021.03.21(일)
등기우편접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주택전시관 방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등기우편접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주택전시관 방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10:00~17:00	10:00~17:00	10:00~17:00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비서류 제출 및 부적격 세대 등 별도통지 예정.</li> <li>※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전시관 방문 계약체결</li> <li>※ 홈페이지(<a href="https://www.elife.co.kr">https://www.elife.co.kr</a>)</li> <li>계약체결 방문예약제를 통한 예약</li> <li>※ 일반인 입장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비서류 제출 및 부적격 세대 등 별도통지 예정.</li> <li>※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전시관 방문 계약체결</li> <li>※ 홈페이지(<a href="https://www.elife.co.kr">https://www.elife.co.kr</a>)</li> <li>계약체결 방문예약제를 통한 예약</li> <li>※ 일반인 입장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a href="https://www.elife.co.kr">https://www.elife.co.kr</a>)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li> <li>※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계약체결 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 방법 등은 추후 통보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a href="https://www.elife.co.kr">https://www.elife.co.kr</a>)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li> <li>※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계약체결 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 방법 등은 추후 통보예정.</li> </ul>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주택전시관 관람을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elife.co.kr>)으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단, 계약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관람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주택전시관 방문시간예약 지정하여 운영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하오니, **당첨자분들께서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 자세한 서류제출 사항은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고객센터(1811-1409)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입장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li> <li>-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li> <li>- 코로나 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li> <li>-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li> </ul>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고객센터(1811-1409)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시공사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4일자로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건설사업부문이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이며, "일체의 자산, 핵심브랜드,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시공능력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 되었습니다. 분할 이후에도 디엘이앤씨 주식회사가 대림산업 건설사업부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건설도급계약 및 공동도급계약상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하자보수의무를 포함한 제반 계약상 의무는 건설공사계약에 따라 디엘이앤씨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주요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법」 제2조 등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민간분양]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 제1지역)	재당첨 제한 10년 (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제한)	공급세대수의 50%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 나머지 50% 기타수도권 거주자 공급	'1층세대 전용정원' 공급(30세대 한정) - 전용정원 임대기간 적용 및 임대료 부과 - 해당타입: 84AT,84CT,98AT,98BT

- 사업명: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1번지 (인천 영종지구 A28블록)
- 공급대상: 총1,409세대 [전용면적 84㎡: 862세대, 98㎡: 547세대]
- 입주시기: 2023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이버 주택전시관 오픈(<https://www.elife.co.kr>) : 2021.01.29(금) 예정.
- 주택전시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검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만 해당)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계약체결 방문예약제)
		경제자유구역,기관추천,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일정	2021.01.29(금)	2021.02.15(월)	2021.02.16(화)	2021.02.17(수)	2021.02.23(화)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2021.03.02(화) ~ 2021.03.11(목)	2021.03.12(금) ~ 2021.03.21(일)
방법	분양홈페이지 등 게재	인터넷청약	인터넷청약		개별조회	등기우편접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주택전시관 방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시간	-	08:00 ~ 17:30	08:00~17:30		-	10:00~17:00	10:00~17:00
장소	■ 분양홈페이지 ( <a href="https://www.elife.co.kr">https://www.elife.co.kr</a>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은행창구 접수 불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미비서류 제출 및 부적격 세대 등 별도통지 예정. ※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 <a href="https://www.elife.co.kr">https://www.elife.co.kr</a> )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계약체결 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 방법 등은 추후 통보예정.	■ 주택전시관 방문 계약체결 ※ 홈페이지( <a href="https://www.elife.co.kr">https://www.elife.co.kr</a> ) 계약체결 방문예약제를 통한 예약 ※ 일반인 입장불가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주택전시관 내 방문청약은 불가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1.29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2020.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중구)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1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제한 및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및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주택소유 구분)	비고
1순위 청약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세대주만 청약가능. ·청약자 및 그 세대원은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주택자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거 재당첨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되나, 제한적용기간이 가장 긴 10년이 적용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전용85㎡ 이하	5년
		전용85㎡ 초과	3년
	그외	전용85㎡ 이하	3년
		전용85㎡ 초과	1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1순위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중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동일단지는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고 다른 단지의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동일단지에 청약자 본인은 특별공급, 배우자는 1순위 신청 또는 당첨자인 경우 청약자 본인만 당첨자로 인정되며, 배우자는 부적격(재당첨 제한)처리 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거 공급질서 교란자는 주택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및 기타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청약 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세대정의], 제2조 제4호[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제7의2, 제28조 제8항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분양권 등 주택소유” 정의, “추첨제 선정방식”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예) 전혼자녀 등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분양권등 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옥 또는 나목의 지위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함)  
 3. 제1호와 제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순위(기존주택 미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제 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20.11.1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9877」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 1호를 적용하여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2020.11.1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9877」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제9호 적용여부 판단기준이 “전체 면적·소형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소형저가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20.09.29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주택 85㎡이하 주택 중 공공주택 15%, 민간택지는 7%)이 적용됩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됩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과거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청약자 신청자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혼인신고일부터 시행일 이전(시행일: 18.12.11)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하는 세대원이 없는 경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 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나, 청약자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를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정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경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최하층이 3층인 주택형도 있으므로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를 참조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및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입니다.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을 도달한 것으로 본다)** 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가정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정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정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
  -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날로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2020.0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에도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분양권 등), 대출유무 등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실행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 등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당시와 향후, 금융정책 규제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2021.01.0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1384호 (2021.01.29)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1번지 (인천영종지구 A28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 지상29층, 16개동 총 1,4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급예정  
일반공급 700세대, 특별공급 709세대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140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8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7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29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42세대)
- 입주시기: 2023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98B (098.0214B)	761동(4호), 762동(4호) 763동(3호), 764동(4호) 771동(3호), 772동(3호) 773동(3호), 774동(4호)	328	1층	6	147,170,300	221,027,000	22,102,700	390,300,000	10,000,000	29,030,000	39,030,000	39,030,000	39,030,000	39,030,000	39,030,000	117,090,000		
			2~3층	16	149,621,200	224,708,000	22,470,800	396,800,000	10,000,000	29,680,000	39,680,000	39,680,000	39,680,000	39,680,000	39,680,000	119,040,000		
			4~5층	16	152,033,700	228,333,000	22,833,300	403,200,000	10,000,000	3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40,320,000	120,960,000		
			6~10층	40	156,068,800	234,392,000	23,439,200	413,900,000	10,000,000	31,390,000	41,390,000	41,390,000	41,390,000	41,390,000	41,390,000	124,170,000		
			11~20층	78	161,724,300	242,887,000	24,288,700	428,900,000	10,000,000	32,890,000	42,890,000	42,890,000	42,890,000	42,890,000	42,890,000	128,670,000		
			21층이상	25	167,380,900	251,381,000	25,138,100	443,900,000	10,000,000	34,390,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133,170,000		
	766동(2호), 767동(2호) 768동(2호), 769동(2호) 770동(2호), 775동(2호)	328	1층	4	145,699,100	218,819,000	21,881,900	386,400,000	10,000,000	2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115,920,000		
			2~3층	12	148,112,700	222,443,000	22,244,300	392,800,000	10,000,000	2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117,840,000		
			4~5층	12	150,526,300	226,067,000	22,606,700	399,200,000	10,000,000	29,920,000	39,920,000	39,920,000	39,920,000	39,920,000	39,920,000	119,760,000		
			6~10층	30	154,523,000	232,070,000	23,207,000	409,800,000	10,000,000	30,980,000	40,980,000	40,980,000	40,980,000	40,980,000	40,980,000	122,940,000		
			11~20층	60	160,103,900	240,451,000	24,045,100	424,600,000	10,000,000	3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127,380,000		
			21층이상	29	165,722,100	248,889,000	24,888,900	439,500,000	10,000,000	3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131,850,000		
			84AT (084.9927T)	11	1층	4	136,120,000	204,180,000		340,300,000	10,000,000	2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102,090,000
						7	134,760,000	202,140,000		336,900,000	10,000,000	2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101,070,000
84CT (084.9819T)	12	1층	4	135,600,000	203,400,000		339,000,000	10,000,000	2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8	134,240,000	201,360,000		335,600,000	10,000,000	2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100,680,000			
98AT (098.0425T)	3	1층	2	147,094,600	220,914,000	22,091,400	390,100,000	10,000,000	2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117,030,000			
			1	145,623,400	218,706,000	21,870,600	386,200,000	10,000,000	28,620,000	38,620,000	38,620,000	38,620,000	38,620,000	38,620,000	115,860,000			
98BT (098.0214T)	4	1층	2	147,170,300	221,027,000	22,102,700	390,300,000	10,000,000	29,030,000	39,030,000	39,030,000	39,030,000	39,030,000	39,030,000	117,090,000			
			2	145,699,100	218,819,000	21,881,900	386,400,000	10,000,000	2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115,92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 중도금 납부 안내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2차 계약금(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자납	중도금 대출(50%): 대출조건이 각 수분양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자납	입주지정일

※ 총 공급대금의 9억이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달하여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향후, 금융정책 규제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m<sup>2</sup>)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927A	084.9922B	084.9819C	098.0425A	098.0214B	084.9927T	084.9819T	098.0425T	098.0214T
약식표기	84A	84B	84C	98A	98B	84AT	84CT	98AT	98BT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 공통사항

- 본 주택의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분양가 심의위원들이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총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총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 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가 무상제공하고, 본 아파트는 전체세대 “확장형”평면으로만 시공되며, 계약자는 “발코니 미확장”을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 할인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며, 단지 내 공동주택과 별도의 대지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5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이자 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용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1차,2차),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계약금(1차,2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청 제한되는 주택은 1순위 등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계약금(1차,2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임.)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락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방법	특별공급 유형	신청방법	비고
<b>■인터넷 청약</b>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청약홈” 검색)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은행창구 접수 불가.  <b>■주택전시관(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한함)</b> ※주택전시관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①사업주체에 주택형별 신청(등기우편 접수 한함) ②경제자유구역청에 특별공급 적합 신청자 명단 송부 ③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적합 여부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④사업주체 추천명단 통보 ⑤해당 관계기관에 선정된 신청자 인터넷 청약접수	
	기관추천	①해당 관계기관에 주택형별 신청 ②해당 관계기관에서 우선순위 선정 ③사업주체 추천명단 통보 ④해당 관계기관에 선정된 신청자 인터넷 청약접수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생애최초·노무모부양	인터넷 청약접수	-

※ 2018 .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접근이 취약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10:00~14:00)에서 접수가 가능함.(본인만 신청가능)

###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 세대)

구분		84A	84B	84C	98A	98B	합계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43	3	40	21	33	140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인천	-	3	-	-	6	
		서울	-	3	-	-	6	
		경기	-	3	-	-	6	
	소계		9	-	9	-	18	
	국가보훈대상자		8	-	8	-	16	
	장기복무제대군인		8	-	8	-	16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9	2	7	-	1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9	1	8	-	18	
소계		34	3	31	-	6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2	1	20	11	17	71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기타 수도권 거주자(50%)	21	1	20	11	16	69	
	소계	43	2	40	22	33	14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인천광역시 거주자(50%)	33	2	31	-	-	66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32	2	30	-	-	64
	소득기준 [일반공급25%]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1	1	10	-	-	22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10	-	10	-	-	20
	소계		86	5	81	-	-	172
생애최초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33	2	30	-	-	65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32	2	30	-	-	64	
	소계	65	4	60	-	-	129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7	1	6	3	5	22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6	-	6	3	5	20
	소계	13	1	12	6	10	42
합계		293	18	273	49	76	70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함.(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 신청자격 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li>※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더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요건 및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청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li> <li>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재당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단,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재당첨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청약자 및 세대원 등 각각 조회해 보시기 바람.</li> <li>•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하시기 바랍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li> </ul> <table border="1" data-bbox="421 924 2908 1234"> <thead> <tr> <th colspan="2">당첨된 주택의 구분</th> <th colspan="2">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td> <td colspan="2">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td> </tr> <tr> <td colspan="2">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td> <td colspan="2">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td> </tr> <tr> <td colspan="2">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td> <td colspan="2">5년간</td> </tr> <tr> <td rowspan="2">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td> <td>과밀억제권역</td> <td>85㎡이하</td> <td>5년</td> </tr> <tr> <td></td> <td>전용85㎡초과</td> <td>3년</td> </tr> <tr> <td rowspan="2">그외</td> <td></td> <td>전용85㎡이하</td> <td>3년</td> </tr> <tr> <td></td> <td>전용85㎡초과</td> <td>1년</td> </tr> </tbody> </table>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전용85㎡초과	3년	그외		전용85㎡이하	3년		전용85㎡초과	1년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전용85㎡초과	3년																												
그외		전용85㎡이하	3년																												
		전용85㎡초과	1년																												
중복당첨 (본인+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분양하는 주택으로 동일단지인 경우 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1인 1건만 신청 가능)은 가능하나 둘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함.</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세대분리된 부부가 세대주로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li> </ul> <table border="1" data-bbox="421 1297 2908 1612">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본인(특별+1순위)</th> <th>본인(특별)+배우자(1순위)</th> <th>본인(1순위)+배우자(1순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 같은 경우</td> <td>같은 단지</td> <td>특별당첨 인정 (1순위 무효)</td> <td>특별당첨 인정 1순위 당첨시 부적격(재당첨 제한)</td> <td>둘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td> </tr> <tr> <td>다른 단지</td> <td>둘 다 무효</td> <td>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td> <td>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 다른 경우</td> <td>같은 단지</td> <td colspan="3">있을 수 없는 사례</td> </tr> <tr> <td>다른 단지</td> <td>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동일 통장사용시 후당첨 무효처리]</td> <td>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td> <td>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td> </tr> </tbody> </table> <p>※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같은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일이 동일함.</p>	구분		본인(특별+1순위)	본인(특별)+배우자(1순위)	본인(1순위)+배우자(1순위)	당첨자발표일 같은 경우	같은 단지	특별당첨 인정 (1순위 무효)	특별당첨 인정 1순위 당첨시 부적격(재당첨 제한)	둘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다른 단지	둘 다 무효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 다른 경우	같은 단지	있을 수 없는 사례			다른 단지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동일 통장사용시 후당첨 무효처리]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구분		본인(특별+1순위)	본인(특별)+배우자(1순위)	본인(1순위)+배우자(1순위)																											
당첨자발표일 같은 경우	같은 단지	특별당첨 인정 (1순위 무효)	특별당첨 인정 1순위 당첨시 부적격(재당첨 제한)	둘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다른 단지	둘 다 무효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 다른 경우	같은 단지	있을 수 없는 사례																													
	다른 단지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동일 통장사용시 후당첨 무효처리]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li> <li>※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li> <li>※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함.</li> </ul>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복당첨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입주자로 선정 된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불가</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기관추천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li> <li>•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li> <li>•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함.</li> <li>• 특별공급 신청은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람, 모든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접수로 우선시 함.</li> <li>•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코로나로 인한 등기우편접수를 우선 시하며 등기우편 및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li> <li>• 또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li> <li>• 부적격 처리 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li> <li>•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경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li> <li>•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하며, 제36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table border="1" data-bbox="439 535 2881 1144"> <thead> <tr> <th colspan="4">[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th> </tr> <tr> <th>특별공급 대상</th> <th colspan="3">청약통장 구비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청약통장 필요없음)</li> <li>•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li> <li>• 신혼부부 특별공급</li> </ul> </td> <td>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td> <td>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td> <td>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최초 특별공급</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li> </ul> </td> <td>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td> <td>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td> <td>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td> </tr> <tr> <th colspan="4">청약예금의 예치금액</th> </tr> <tr> <th>구 분</th> <th>인천광역시</th> <th>서울특별시</th> <th>경기도</th> </tr>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p>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청약통장 필요없음)</li> <li>•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li> <li>• 신혼부부 특별공급</li> </ul>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최초 특별공급</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li> </ul>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청약통장 필요없음)</li> <li>•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li> <li>• 신혼부부 특별공급</li> </ul>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최초 특별공급</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li> </ul>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li> <li>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li> <li>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li> <li>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li> </ul> </li> <li>②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48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의 당해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li> <li>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li> <li>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약국.</li> <li>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li> <li>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춘자는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입주자가 선정되므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게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함.</li> <li>•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확정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li> <li>•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해당 주택형의 특별공급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ul>

<p><b>기관추천 특별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b>수도권</b>(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b>(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b></li> <li>청약자격요건 :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li> <li>※ 중소기업근로자,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장애인: <b>수도권 거주지역 장애인복지과</b></li> <li>②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등: <b>인천보훈지청 복지과</b></li> <li>③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b>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b></li> <li>④중소기업 장기근속자: <b>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b></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ul>
-------------------------	---	---

<p><b>다자녀가구 특별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수도권</b>(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b>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태아나 입양아를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b></li> <li>청약자격요건 :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li> <li>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li> <li>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li>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이혼·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임신의 경우: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②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li> </ul> </li> <li>※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li> <li>※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 일부개정]에 의거 다자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b>인천광역시</b>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b>나머지 50% 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함.</b></li> <li><b>경쟁이 있을 경우</b>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li> <li><b>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b></li> <li>“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li> <li>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li> </ul> </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ul>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주택에 한정함)**

배 점 표				비 고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무주택기간(4)	2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공급신청자가 성년인 만 19세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 기간부터 산정) 단,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을 산정 함.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인 만 19세부터(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 기간부터 산정)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경기·서울·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p>(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 배우자의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p> <p>※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p>				
<p>※ 상기 기재 사항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p> <p>※ 주민등록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p>				

<b>신혼부부 특별공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b>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의 <b>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b>을 갖추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주에서 정한 <b>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b></li> <li>단, 혼인신고일로부터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b>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b>(「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li> <li>• 청약자격요건 :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li> <li>•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li> <li>•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b>1순위에 해당.</b></li> <li>•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li> <li>•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li> <li>※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b>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함.</b></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소형자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를 제외한,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이외 주택소유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혼인신고일로부터 시행일 이전(시행일:’18.12.11)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신혼부부(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이 부여함.</li> <li>•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b>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b>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함.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li> <li>▪ <b>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li> <li>① <b>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b>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및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li> <li>② <b>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b></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style="width: 50%;">1순위</th> <th style="width: 50%;">2순위</th>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자녀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li> <li>-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li> </ul> </li> <li>※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b>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됨.</b></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자녀 신혼부부</li> <li>•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 완료에 한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신혼부부</li> </ul>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내 거주자(50%)순으로 우선 공급함.</li> <li>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li> <li>*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미성년자녀수 포함.</li> </ul> </li> <li>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li> </ol> </li> <li>-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내 거주자(50%)순으로 우선 공급함.</li> <li>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li> <li>*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미성년자녀수 포함.</li> </ul> </li> <li>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li> </ol> </li> </ul> </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ul>	1순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자녀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li> <li>-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li> </ul> </li> <li>※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b>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자녀 신혼부부</li> <li>•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 완료에 한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신혼부부</li> </ul>																																															
	1순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자녀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li> <li>-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li> </ul> </li> <li>※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b>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자녀 신혼부부</li> <li>•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 완료에 한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신혼부부</li> </ul>																																																			
	<b>■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통계청 자료)</b>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공급비율 (신혼부부배정세대수)</th> <th rowspan="2">소득대상</th> <th rowspan="2">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th> <th colspan="6">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th> </tr> <tr>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우선공급 (기준소득)</td> <td rowspan="2">75%</td> <td>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td> <td>100% 이하</td> <td>5,554,983원</td> <td>6,226,342원</td> <td>6,938,354원</td> <td>7,594,083원</td> <td>8,249,812원</td> <td>8,905,541원</td> </tr> <tr> <td>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20% 이하</td> <td>6,665,980원</td> <td>7,471,610원</td> <td>8,326,025원</td> <td>9,112,900원</td> <td>9,899,774원</td> <td>10,686,649원</td> </tr> <tr> <td rowspan="2">일반공급 (상위소득)</td> <td rowspan="2">25%</td> <td>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td> <td>100%초과~120%이하</td> <td>5,554,984원 ~ 6,665,980원</td> <td>6,226,343원 ~ 7,471,610원</td> <td>6,938,355원 ~ 8,326,025원</td> <td>7,594,084원 ~ 9,112,900원</td> <td>8,249,813원 ~ 9,899,774원</td> <td>8,905,542원 ~ 10,686,649원</td> </tr> <tr> <td>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20%초과~130%이하</td> <td>6,665,981원 ~ 7,221,478원</td> <td>7,471,611원 ~ 8,094,245원</td> <td>8,326,026원 ~ 9,019,860원</td> <td>9,112,901원 ~ 9,872,308원</td> <td>9,899,775원 ~ 10,724,756원</td> <td>10,686,650원 ~ 11,577,203원</td> </tr> </tbody> </table>		구분	공급비율 (신혼부부배정세대수)	소득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구분	공급비율 (신혼부부배정세대수)					소득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li> <li>※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함.</li> <li>■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함.</li> </ul>																																																					

<p><b>생애최초 특별공급</b></p>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자.</b></p> <p>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에 해당(제53조 9호는 제외)</p> <p>②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1순위를 충족하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296 252 1276 388"> <tr> <td>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b>일반공급 1순위</b>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b>청약</b>이 가능함</td> </tr> <tr> <td>•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 납입 할 것.</td> </tr> <tr> <td>• 세대주일 것.</td> </tr> <tr> <td>•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td> </tr> </table> <p>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p> <p>④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신청한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p> <table border="1" data-bbox="296 514 1276 661"> <tr> <th>구분(청약자 기준)</th> <th>소득세 납부 기준</th> </tr> <tr> <td>근로자 및 자영업자</td> <td>과거 5개년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td> </tr> <tr> <td>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td> <td>①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②과거 5개년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td> </tr> </table> <p>※ <b>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배제함. 1년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b></p> <p>※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음.</p> <table border="1" data-bbox="296 745 1276 892"> <tr> <td>-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td> </tr> <tr> <td>-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td> </tr> </table> <p>⑤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성년인자(만19세 이상)] 전원의 소득을 포함)이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b>130% 이하인 자.</b></p> <p>※ <b>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b></p> <p>※ 가구원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p>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b>일반공급 1순위</b>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b>청약</b> 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구분(청약자 기준)	소득세 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과거 5개년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②과거 5개년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p>•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내 거주자(50%)순으로 우선공급함 단, 동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함.</p> <p><b>[*표] 20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통계청 자료</b></p> <table border="1" data-bbox="1335 273 2878 588"> <thead> <tr> <th>구분</th> <th>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th>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td> <td>130% 이하</td> <td>7,221,478원</td> <td>8,094,245원</td> <td>9,019,860원</td> <td>9,872,308원</td> <td>10,724,756원</td> <td>11,577,203원</td> </tr> </tbody> </table> <p>• <b>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b></p> <p>※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b>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b>[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p> <p>※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p> <p>※ <b>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포함되지 않음)</b></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p>	구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b>일반공급 1순위</b>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b>청약</b> 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구분(청약자 기준)	소득세 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과거 5개년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②과거 5개년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구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p><b>노부모부양 특별공급</b></p>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b></p> <p>※ <b>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b></p> <table border="1" data-bbox="296 1239 1276 1375"> <tr> <td>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b>일반공급 1순위</b>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b>청약</b>이 가능함</td> </tr> <tr> <td>•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 납입 할 것.</td> </tr> <tr> <td>• 세대주일 것.</td> </tr> <tr> <td>•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td> </tr> </table>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p> <p>※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p>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p>※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소형·저가주택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b>일반공급 1순위</b>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b>청약</b> 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p>•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내 거주자(50%)순으로 우선공급함.</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표2] 가정점수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p> <p>•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p> <p>•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p>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b>일반공급 1순위</b>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b>청약</b> 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일반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p><b>신청 자격요건</b></p>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b>[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은 세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1.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인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단, 경쟁이 있을 경우,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p> <p>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p> <p>※ <b>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함.</b></p>
<p><b>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요건</b></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 1항 다목에 의거 아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을 납입 할 것</li> <li>• 세대주일 것</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순위별 자격요건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신청자격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1순위	85㎡ 이하	가정제 75% 추첨제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li> <li>■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li> <li>■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4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으로 전환한 자.</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에게 우선 공급합니다.</li> </ul>	
			85㎡ 초과	가정제 30% 추첨제 70%		
2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가입한 자)</li> </ul>			
청약제한 대상자		내용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세대주가 아닌 자.</li> <li>②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li> <li>③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li> </ul> </li> </ul>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li> </ul>				
중복당첨 (본인+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으로 동일단지인 경우 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1인 1건만 신청 가능)은 가능하나 둘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함.</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세대분리된 부부가 세대주로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li> </ul>					
	구분		본인(특별+1순위)	본인(특별)+배우자(1순위)	본인(1순위)+배우자(1순위)	
	당첨자발표일 같은 경우	같은 단지	특별당첨 인정 (1순위 무효)	특별당첨 인정 1순위 당첨시 부적격(재당첨 제한)	둘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다른 단지	둘 다 무효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 다른 경우	같은 단지	있을 수 없는 사례				
	다른 단지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동일 동장사용시 후당첨 무효처리]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같은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일이 동일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 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함)</li> <li>3. 제1호와 제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순위(기존주택 미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공급 함.</li> </ol> </li> <li>※ 민영주택 추첨제 제 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li> <li>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li> <li>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li> </ol> </li> <li>※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ul>					
	<b>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b>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로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함.</li> </ul> </li> </ul>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비고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기타 (청약신청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과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li> <li>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표2]가점 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li> <li>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li> <li>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li> <li>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li> <li>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li> <li>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li> <li>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람.</li> <li>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li> <li>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li> <li>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li> </ul>				

■ [표2]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30세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li> <li>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만18세 이상(혼인적령 만18세)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양가족수 산정 시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 점	84	공급신청자 청약가점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53조 제 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시(기존주택 및 분양권 등) 부양가족수 미포함하여 산정함.(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li> <li>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li> </ul> </li> <li>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li> <li>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li> </ol>

<p>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으로 함.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세대주)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p> <p>2)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p> <p>3) 무주택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p> <p>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p> <p>②단, 직계존속 1인이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③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예: 청약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p> <p>④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p> <p>⑤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인정 불가.</p> <p>⑥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 인정 불가.</p> <p>4) 직계비속(자녀·손자녀)</p> <p>①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p> <p>②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p> <p>③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제외.</p> <p>④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p> <p>※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p> <p>※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정정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p>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p>주택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p>	<p>■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li> <li>●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li> <li>●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 :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ul> </li> <li>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li> <li>■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연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② 85㎡ 이하의 단독주택.</li> <li>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li> <li>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li> <li>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li> <li>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li> </ol> </li> </ul>
<p>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p>	<p>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함.</p> <p>②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권 : 1년</li> <li>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li> </ol> <p>③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li> <li>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선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li> </ol>
<p>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li> <li>•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li> <li>•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li> <li>•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로 인정됨.</li> <li>•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li> <li>•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li> <li>•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li> <li>•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li> <li>•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b>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III. 신청일정 및 방법,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청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02.15(월)</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08:00~17:30)</li> <li>(주택전시관 : 10:00~14: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li> <li>-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청약홈” 검색)</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li>※ 은행창구 접수 불가.</li> <li>■주택전시관(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한함)</li> <li>※주택전시관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li> </ul>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02.16(화) 08:00~17: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li> <li>• 청약통장 은행 창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청약홈” 검색)</li> </ul>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02.17(수) 08:00~17:30</li> </ul>		

- ※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주택전시관 내 방문청약은 불가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함.**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 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한국부동산원 (숲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p>
<p>[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서,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li> </ul> <p>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표3]특별공급 구비서류(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 청약서,인터넷 청약 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경제자유구역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장이 정하여 선정하므로 해당서류는 제출 제외)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경제자유구역,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확인(공통서류만 제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주택전시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소득 확인(주택전시관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주택전시관 비치
	○		재직증명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 :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주택전시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내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b>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b> 확인(주택전시관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b>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b>										
		○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피부양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가구원수 포함여부 확인 필요시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재직증명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b>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b>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b>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b>										
	○		소득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li>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b>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b>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1] 소득증빙서류 및 [표2] <b>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b> 참조.</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20%;">구분</th> <th style="width:20%;">서류구분</th> <th style="width:40%;">확인자격</th> <th style="width:20%;">비고(소득세납부 입증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b>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b></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아래 [표2] 참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b>과거 1년 내</b>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td> </tr> </tbody> </table> <p>※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p>	구분	서류구분	확인자격	비고(소득세납부 입증서류)	<b>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b>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아래 [표2] 참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b>과거 1년 내</b>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
구분	서류구분	확인자격	비고(소득세납부 입증서류)												
<b>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b>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아래 [표2] 참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b>과거 1년 내</b>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li> <li>•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li> </ul>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b>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b>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li> <li>*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li>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제3자 대리인 (당첨자겸수일/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당일 주택전시관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확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①,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b>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b>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1)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장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 요망.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서(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①홈택스→②신고/납부 → ③세금신고 → ④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해당연도 내 환급 받지 못한자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직접납부자는 납부내역증명을 함께 발급하시기 바람.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 요망.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등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검수일(서류제출 방문 예약제)	계약체결(계약체결 방문예약제)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1.02.23(화)</li> <li>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li>※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은 추후 통보예정.</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제출방식</td> <td>등기우편접수</td> <td rowspan="4">※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 방법 등은 추후 통보예정.</td> </tr> <tr> <td>대상</td> <td>•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td> </tr> <tr> <td>서류제출 및 검수 일정</td> <td>2021.03.02(화) ~ 2021.03.11(목), 10:00~17:00</td> </tr> <tr> <td>장소</td> <td>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비고	제출방식	등기우편접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 방법 등은 추후 통보예정.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일정	2021.03.02(화) ~ 2021.03.11(목), 10:00~17:00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1.03.12(금) ~ 2021.03.21(일) (10:00~17:00)</li> <li>계약장소 : 주택전시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li> <li>계약방문예약 : 2021.03.02(화) ~ 2021.03.11(목)까지</li> <li>계약방문예약 접수: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홈페이지</li> <li>※자세한 예약방법의 고지는 당첨자발표후 개별안내예정임.</li> </ul>
구분	내용		비고													
제출방식	등기우편접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 방법 등은 추후 통보예정.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일정	2021.03.02(화) ~ 2021.03.11(목), 10:00~17:00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검수서류는 등기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li> <li>※서류제출 기간 이후 도착 분은 당첨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빠른등기로 발송하여 주시길 바람.</li> <li>• 각 공급유형별 당첨자는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표3] 특별공급 서류</th> <th>계약체결 서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표3] 특별공급 서류	계약체결 서류	비고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			
구분	[표3] 특별공급 서류	계약체결 서류	비고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람.</li> <li>※ 당첨자 검수 기간 내 당첨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필히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됨.</li> <li>※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li> <li>※ 사전예약 방문접수 / 계약체결 방식 및 일정 등 추후 통보 예정.</li> <li>※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계약체결 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li> </ul>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사전 서류제출 안내(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일반공급(예비당첨자 포함) 계약 시 구비서류 제출)**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동규칙 제52조②(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시에 서류제출을 생략한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검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당첨자는 계약체결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에 참가 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당첨자는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추첨일에 참가할 수 없음**.
- **예비 입주자 추첨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축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모든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접수를 우선시 하며**, 모든 **제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사항 및 서류제출안내문(사업주체발송예정)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 하며, 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체결 불가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검수기간 일정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서류, 일반예비입주자는 해당 계약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람.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임.
-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임.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등**(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함.
-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에서 공급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2.23(화) ~ 2021.03.04(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2.23(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b>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li> </ul>		
<b>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정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b>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 선정하며, 나머지 잔여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중 낙첨자와 기타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함.</b></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td> </tr> <tr> <td>-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td> </tr> </table> </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li> </ul>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주택전시관)가 가능함.</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등기우편 접수를 우선시 함.</li> <li>• 특별공급 신청은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li>•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b>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b></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만 가능)</li> </ul>
------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공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V. 계약체결

■ 계약체결 서류(특별공급 당첨자(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은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람.)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		계약금(1차)	-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서약서	-	• 주택전시관 비치※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무주택) 등) 및 일반공급[1순위 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계약자	• 주택전시관 비치
	○		신분증	계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출입국사실증명서	계약자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경제자유구역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장이 정하여 선정하므로 해당서류는 제출 제외)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초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복무확인서	계약자(장기복무군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불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불)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봄.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지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이자 후불제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도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주 시 부동산 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사전방문 확인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예정일 : 2023년 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부대 · 복리시설**

부대 ·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실내체육관,휘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작은 도서관, 그린카페 등

**VI. 추가선택품목 계약(유상옵선) ※계약일 및 납부계좌 안내 등 별도 안내**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및 납부방법, 납부계좌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추가선택 품목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1)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타입	선택안	설치위치	업체명	판매금액	비고
84A,84B,84C	선택1	2대	거실+침실1	LG/삼성	택1 홈네트워크 연동형
84AT,84CT	선택2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삼성	
98A,98B 98AT,98BT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LG/삼성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LG/삼성	
	선택3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LG/삼성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실과 안방(침실1)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손절할 실내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일반형으로 제공하며, 해당모델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시에 별도 안내 후 계약실행함.(공기청정기능형 미판매/삼성은 무풍에어컨 제공)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됨.

**(2)가전제품**

적용품목	주택형	제조사	상품명 (모델명)	판매가격	비고
빌트인냉장고	전타입	LG	CLADING BIS냉장고 홀바형 (S711SI24B)	5,750,000	택1
			CLADING BIS냉장고 디스펜서형 (S691SI34BS2)	7,650,000	비스포크 선택시 선택불가
비스포크 SET	84A,84C,98A,98B 84AT,84CT,98AT,98BT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RZ24T5660AP) + 냉장고(RR39T7695AP) + 김치냉장고(RQ32T7645AP)	4,800,000	택 비스포크3종셋트로만 판매
	84B, 98B, 98BT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RZ24T5660AP) + 냉장고(RR39T7695AP) + 김치냉장고(RQ32T7645AP) + 팬트리장	5,900,000	택 비스포크3종+팬트리장셋트로만 판매

빌트인 김치냉장고	84A,84C,98A,98B 84AT,84CT,98AT,98BT	삼성	김치냉장고 (RQ22K5R(L)01EC)	1,250,000	택1 비스포크 선택시 불가
		LG	김치냉장고 (K221PR14BL/R1)	1,250,000	
	84B	삼성	김치냉장고 (RQ22K5R(L)01EC)+팬트리장	2,350,000	택1 김치냉장고와 팬트리장 셋트로만 판매 비스포크 선택시 선택불가
		LG	김치냉장고 (K221PR14BL/R1)+팬트리장	2,350,000	
빌트인 전기오븐	전타입	SK매직	전기오븐 (EON-B450M)	400,000	택1
		SK매직	스팀오븐 40ℓ (EONB401SA)	650,000	
		SK매직	IOT 스팀오븐 40리터 (EONB440SA) 40ℓ	1,04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84A,84B,84C 84AT,84CT	삼성전자	삼성 식기세척기 8인용 (DW50T4065SS)	620,000	택1
		SK매직	SK매직 식기세척기 8인용 (DWA2628B)	500,000	
	98A,98B 98AT,98BT	삼성전자	삼성 식기세척기 12인용 (DW60T7065SS)	820,000	택1
		SK매직	SK매직 식기세척기 12인용 (DWA81R5B)	1,090,000	
빌트인 하이브리드쿡탑 / 인덕션	전타입	SK매직	가스1구 + 인덕션2구 (GRA-BI322H))	850,000	택1
		SK매직	인덕션2구+ 하이라이트1구 (ERA-BT030)	800,000	
		SK매직	인덕션 더블쿼드 ( IHR-BQ40)	1,950,000	

-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구성 및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 삼성 비스포크 가전은 B2B 전용모델이며 비스포크3종을 구성하여 주방공간을 맞춤 디자인한 상품으로 상품구성, 디자인 변경, 결합구성품의 구분판매는 불가함.
- ※ 하이브리드쿡탑 및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및 제공 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반영함.
- ※ 주방의 대형 팬트리장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음.
- ※ 주택전시관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 빌트인 가전제품 선택에 따라 가구의 깊이, 몰딩(휼샤) 등의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가구 및 마감재 등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선택	설치 위치 및 내용	판매가격	비고
대형 팬트리장	84A,84C,98A,98B 84AT,84CT,98AT,98BT	주방후면	대형 팬트리장	1,300,000	택
작은방 드레스룸	84C,84CT	침실3	침실3 드레스룸 (도어+시스템가구)	1,000,000	택
	98A,98AT	침실4	침실4 드레스룸 (도어+시스템가구)	1,030,000	택
	98B,98BT	침실4	침실4 드레스룸 (도어+시스템가구)	930,000	택
침실1 드레스룸	84A, 84AT	선택1	불박이장	2,280,000	택1
		선택2	LG스타일러(S3HFB) + 불박이장	3,580,000	
		선택3	삼성 에어드레서(DF60T8300WR/L) + 불박이장	3,630,000	
	84C,84CT	선택1	불박이장	1,400,000	택1
		선택2	LG스타일러(S3HFB) + 불박이장	2,700,000	
		선택3	삼성 에어드레서(DF60T8300WR/L) + 불박이장	2,750,000	
	98A,98AT	선택1	불박이장	2,300,000	택1
		선택2	LG스타일러(S3HFB) + 불박이장	3,600,000	
		선택3	삼성 에어드레서(DF60T8300WR/L) + 불박이장	3,650,000	
	84B, 98B, 98BT	선택1	LG스타일러(S3HFB)	1,630,000	택1
선택2		삼성 에어드레서(DF60T8300WR/L)	1,680,000		
작은방 불박이장	전타입	침실3	침실3 불박이장	980,000	택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84A, 84AT	-	주방가구 상판 + 주방벽 + 아일랜드 상판	1,430,000	택
	84B	-	주방가구 상판 + 주방벽 + 아일랜드 상판	1,530,000	택
	84C,84CT	-	주방가구 상판 + 주방벽	2,290,000	택
	98A, 98AT	-	주방가구 상판 + 주방벽 + 아일랜드 상판	1,650,000	택
	98B, 98BT	-	주방가구 상판 + 주방벽 + 아일랜드 상판	1,930,000	택
현관중문	84A,84B,84C 84AT,84CT	LG 하우스	3연동슬라이딩 (브론즈 투명)	1,700,000	택
	98A,98B 98AT,98BT	LG 하우스	3연동슬라이딩 (브론즈 투명)	1,750,000	택

-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 시 현관입구는 기본설계대로 시공되고, 신발장의 크기 및 디자인,인접부위 마감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 불박이가구(주방포함) 선택 시 설치 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하여 산정하였음.
- ※ 주방가구 옵션 및 불박이가구, 미선택 시에는 기본 설계대로 시공됨.
- ※ 대형 팬트리장은 타입별 구조에 따라 상세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음.
-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과 의류관리기는 주택타입에 따라 설치위치와 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추후 별도 통지예정	

- 추가선택품목 계약 및 납부계좌 안내는 별도 안내 예정임.
-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정된 옵션 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서류제출 시 입금증은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패에 준함.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예시 761동 1502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7611502홍길동' / 763동 702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7630702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르며, 공고문에 상세히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함.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정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사의 동급,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시공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 가능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추가선택 품목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는 시공사에 귀속됨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 체결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주택전시관,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주택전시관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와 형태가 주택전시관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됨.(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됨.)
- 주택전시관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시 주택전시관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 추가 선택 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형태, 사이즈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Ⅶ.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타일,인조대리석> <타일>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3)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전열교환기
4) 일반가구	신발장, 불박이장, 팬트리(시스템 선반포함), 드레스룸(시스템가구 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5)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b>렌지후드, 상부장(렌지후드 설치), 자동식소화기, 가스배관</b>
6)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재, <b>인조대리석</b> , 재료분리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7)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디지털 도어락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실외기실 도어
8)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9)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b>실외기실 배수구, 실외기실 배수 입상배관, 하향식 피난구, 보일러</b>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84A	84B	84C	98A	98B	84AT	84CT	98AT	98BT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28,711,095	28,603,377	28,867,650	34,241,087	34,313,171	28,711,095	28,867,650	34,241,087	34,313,171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람,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따라 입주 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벽 분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주택전시관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모양, 입면, 환기용캐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차량 출차 알람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허가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b>인·허가</b>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외부색상,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현황	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자동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 오수중계펌프장, 묘지공원(불안당),소각장, 집하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등), 변전소,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본 사업지 지역은 항공기소음 노출지역으로 그에 따른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에 북측에 도시계획도로(대로, 폭원 <b>33.5m</b> ), 서측에 도시계획도로(중로, 폭원 <b>25m</b> )가 설치예정입니다.	
	본 단지의 북측, 서측에 완충녹지, 동측, 남측에는 연결녹지 설치예정입니다.	
	본 사업지 내 및 인근의 시설 확장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위치, 모양, 크기, 형태,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지 인근에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설치예정이나, 향후 해당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면적, 규모, 위치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경계에는 울벽,투시형 헨스 또는 생물타리,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소음,진동, 분진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조망권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아파트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 무관합니다.</b>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b>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등에 따라, 도로면적(보도 포함)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b>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b>[실제 현황과 CG 이미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 기부채납시설(공원, 도로 등), 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서울9호선 직결운행,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b>사전에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현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 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	
학교 등 교육시설 관련	영유아보육법개정('18.12.24)에 따라 당 사업지는 「주택법」 제35조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립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반대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설치 운영을 위해 추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b>인천영종초등학교, 인천별빛초등학교</b> 에 배정될 예정이나, 주변 학급당 인원 및 인근 학교수용률에 따라 학교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계획은 <b>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교육청</b> 등 진행 중이므로 신설학교 설립 및 진행 관련 사항은 해당관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은 <b>9중학군(영종중, 중산중, 하늘중(21년 3월 개교예정))</b> 에 배정될 예정이며, 지역 내 학생의 지망 학교 순위에 따라 학생을 배정합니다.	
	<b>인천광역시 중구(영종도)는 특수지 고등학교 지역으로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입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평준화 지역이 학생의 지망 순위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과는 달리, 특수지 고등학교 지역의 고입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합니다. 따라서, 비평준화지역의 고입전형에 대한 문의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b>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12782</b> ]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주식회사 영종하늘도시2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인천 영종지구(A-28BL)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을 적기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천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정책변화, 입주시기 및 학생 발생률 변동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		
단지 공통사항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청,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각 세대의 주거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계단, 복도 등) 및 이와 유사한 공간(옥상, 피난층 등)은 본 아파트의</b>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세대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등,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 설계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건축물(주동,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및 형태,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p> <p>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 등을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일부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최초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p> <p>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p>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수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야간조명,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b>「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b></p> <p><b>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761동, 762동, 764동, 769동, 771동, 773동, 775동)과 지하1층에 설치됩니다.</b></p> <p>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울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p> <p>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p> <p>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코어, 전후면 외관, 축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및 난간의 모양 및 색, 색채),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축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시설 등이 설치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울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b>자동크린넷의 높이(인접한 세대의 미관저해), 지하관로를 통한 소음, 폐기물의 냄새, 쓰레기수거차량 등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 등과</b>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실 시공시 대지의 단차가 심할 경우 안전용 난간이 추가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p> <p>경관조명, 수경시설 설치,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사용자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되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홈네트워크 서버(Server) 유지, 보수, 통신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p> <p>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화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p> <p><b>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b></p> <p>「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 단위 구역 내 크린넷 설치의무로 계획되어 있으나, 입주 시 자동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b>단지 내 자동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가 6개소 설치예정이며, 동 위치에 따라 쓰레기 이송설비까지의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b></p> <p><b>자동크린넷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는 일반가연성 및 음식물쓰러기이며, 쓰레기배출 시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함. 또한, 자동크린넷을 이용하여 수거하지 아니하는 불연성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은 기존 방식(차량을 이용한 인력수거)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b></p> <p>쓰레기 이송설비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에는 음식물이 흐르거나 고여 냄새 및 악취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지하에 집적된 뒤 이송 관로를 통해 단지 밖으로 배출되며 이를 위한 쓰레기 투입구 및 공기 흡입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냄새 및 미관상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단지출입구	<p>단지 차량출입구는 단지 북측 및 서측에 2개소 설치되며 인접한 동에는(주출입구: 761동, 762동, 775동, 776동, 부출입구: 772동,771동 저층부 세대) 차량 진출입용 도로와 램프가 인접하여 있어 소음,차량불빛 및 진동, 조망,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보행출입구는 단지 북측 주출입구 및 서측 부출입구 총 2개소 외 동측, 서측에 3개소가 설치되며 인접한 동에는(761동, 762동, 765동, 767동, 771동, 772동, 774동, 775동, 776동 저층부 세대) 보행자 출입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p> <p>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단지 이미지 개선 등 차별화를 위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조경	<p>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옆 쓰레기분리수거함은 사용상 상가용으로 계획하였고 대지지분과의 관계는 별개 사항입니다.</p> <p>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 DA, 실외기, 천창, 등 기타 구조물과 시설물로 인하여 소음, 악취, 조망 등 생활권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p> <p>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소방매트자리 등의 설치요청에 따라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동행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p>
지하주차장	<p>본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1개층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층에서 해당 동 ELEV.로 연결되어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약 2.7m이며, 지하1층 주차장의 차로높이는 2.7m로 계획됨. 주차장의 최저 차로 높이 및 유효 충고 높이에 따라 탑차 등의 출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의 주차대수는 총 1,967대(공동주택 1,944대, 세대당 약1.38대, 근린생활시설 23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단지 내 지상의 도로는 소방차 등 비상차량용 도로입니다.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이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의 위치적 특성상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에는 주차유도 시스템이 적용됩니다.</p> <p>지하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p> <p>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 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있고,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역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휨통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 또는 벽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p> <p>주거동의 위치에 따라 지하 동출입구와 주차면 사이의 이동거리가 일정치 않고, 근접한 주차면이 타 주거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콘센트는 전기자동차 충전용 콘센트 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형태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복리시설 중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과 복리시설(상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며, 단지 내 공동주택과 별도의 대지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지상 주차 23대)을 이용해야 합니다.</p> <p>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 디자인, 마감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본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p> <p>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p> <p>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관리사무소, 경비실, 암스태이션, 암스라온지,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시설, 오피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p>	
		<p>엘리베이터출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p> <p>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p> <p>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p> <p>계단실창은 피난 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됨.(단 주동 평면도에 따라 일부 층의 창문은 창문형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 <p>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부속동:지상1층),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근린카페,게스트룸,암스태이션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본 아파트의 연결산책로는 774동,767동,765동 인근에 총3개소의 연결산책로가 설치예정입니다.</p> <p><b>761동 북동측에는</b>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해당동 저층부 세대는 출입동선 및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p> <p><b>763동,764동,765동 북동측 지하2층~지상1층</b>에는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등(지하2층: 실내체육관,지하1층: 피트니스, 지상1층: 작은 도서관,경로당,실내놀이터,게스트룸(파티룸)) 등이 인접되어 있어 해당동 저층부 세대는 출입동선 및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p> <p>저층부에는 단지내 보행 통과동선 및 주동 진입을 위한 1~2개층 높이의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해당동 저층부 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p> <p>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쓰레기분리수거장, 실외기,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p> <p>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휨통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주동 저층부 석재는 입면디자인에 따라 석종, 마감면 등의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b>768동 지붕층에 설치되며 시공 여건에 따라 위치나 크기</b>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옥상에는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예정입니다.</p> <p><b>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b></p> <p><b>자동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인접한 해당동 저층부 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b></p> <p><b>762동 동측, 764동 북측, 765동 남동측, 770동 남동측, 773동 북측, 776동 서측에는</b> 쓰레기 이송설비 투입구가 설치예정이며, 향후 위치 및 개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각 세대는 <b>개별난방</b>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b>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급수 조닝 및 입상방식은 진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p> <p>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지역난방 조닝 및 입상방식은 진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주택전시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설치 개소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색상 및 사이즈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p> <p>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b>가구의 모양, 형태, 사이즈 등</b>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b>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참조</b>하시기 바랍니다.</p> <p>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p> <p>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b>위치 및 사이즈, 커버재질</b>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p> <p>옵션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건립세대의 경우, 평면에 따라 조명기구 수량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위세대</p>	<p>공통사항</p>

		공동주택(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현관디딤판, 화장대, 욕실 등에 사용되는 <b>인조대리석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배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b> , 본 공사 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b>세대 내</b> 설치된 내외부 창호의 크기 및 위치, 하부턱 높이 등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창호의 유리 사양, 프레임형태, 분할, 색상,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부 세대 비확장시(마이너스 옵션 선택)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사이버 주택전시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인조대리석, 타일의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상판은 인조대리석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으며,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주방, 욕실, 발코니 등에 적용된 <b>자재</b> 의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b>불박이가구, 주방가구 등 설치 부위의 천장,후면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b>
		본 공사 시, 층문 옵션 도어의 형태 및 천장 몰딩 디테일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실시공사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세대 내 설치되는</b>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욕실 <b>상부</b> 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의 가스계량기 <b>설치위치</b> 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 (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됩니다.(단,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에는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세대내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아일랜드장 포함)
		주방가구 상판에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내 욕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발코니 및 주방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b>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b>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급수·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슴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하향식 피난구는 3층 이상 모든 세대(761동 301호 제외)와 하부가 필로티인 세대를 제외한 모든 2층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2층 이상의 모든 세대와 일부 1층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b>		
<b>761동 301호는 실외기실에 완강기가 설치되며, 실외기실 루버는 외부 개폐형 루버가 설치 됩니다.</b>		
<b>761동 1호라인의 1층,2층은 피트로 설계되어 있어 다른 동의 필로티 적용 설계와 상이합니다.</b>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주택형별로 기본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거실 우물천장 설치 범위, 깊이 등은 타입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구 수납장의 배치에 따라 제공되는 콘센트의 형태, 수량이 서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흡서버,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TYPE, 위치, 수량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TYPE)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품목(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b>평면도 상의 치수는 안목치수 기준입니다. 공사 시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b>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등의 규기는 기본형(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산정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옵션(아트월,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가구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는 안목치수 산정시 제외되었습니다. ex :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아트월 타일 및 부착두께를 제외한 면적이며 디자인월 실측 치수는 아트월 두께 만큼 줄어들게됩니다.		
추가옵션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디퓨저 등의 형태, 수량, 위치 등이 서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거실의 천장고는 <b>2,300mm</b> 입니다.		

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 하였습니다.  
**일부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에는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으며, 덮개를 밟거나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드레인, 선홍통,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증강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미관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확장(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드레인 위치 등에 따라 바닥, 세탁단의 높이가 서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총 1,409세대 중 아래 표와 같이 일부 1층 세대(30세대)에 한하여, 장기 임대방식(70년)으로 "1층세대 전용정원"을 공급합니다.(※ 각 타입의 동배치 등에 따라 '1층세대 전용정원'의 구조,면적 등은 세대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타입	동	호	구조	임대료(70년 임대)	임대료 납부시기
84AT	762	102	B	W12,600,000원	입주지정기간 내 아파트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
	762	103	B		
	763	102	D		
	764	102	D		
	766	103	D		
	767	103	D		
	768	103	D		
	772	102	D		
	773	102	D		
	774	102	D		
	775	104	D		
84CT	763	101	D-1		
	764	101	D-1		
	765	101	C		
	766	104	D-1		
	767	104	D-1		
	768	104	D-1		
	769	101	C		
	770	101	C		
	772	101	D-1		
	773	101	D-1		
774	101	D-1			
775	105	D-1			
98AT	761	105	A		
	765	102	A		
	771	104	A		
98BT	761	104	A		
	769	102	A		
	770	102	A		
	771	103	A		

본 시공 시 세대 정원의 수목의 종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시공 시 외벽 석재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높이 및 재질 등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석재의 석종, 석재 색상, 석재 마감등의 상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시공 시 동 배치등에 따라 세대정원의 기반부 높이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시공 시 바닥 배수를 위한 배수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층세대 전용정원' 범위안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각 해당타입 정원의 구조,디자인의 형태, 재질, 마감자재, 마감사양, 색채 등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각 해당타입의 동배치에 따라 난간대, 석재 설치 범위, 사이즈, 색상, 형태 등이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층세대 전용정원' 내 설치되는 지붕의 높이/형태, 텃밭/수목의 종류,높이 등 인접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침해될 수 있습니다.  
 '1층세대 전용정원'에 조성되는 나무, 지붕, 관리규약에 허용되는 설치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이삿짐 사다리 이용불가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층세대 전용정원' 세대의 수분양자는 조성되는 정원 및 설치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 철거 및 설치 변경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1층세대 전용정원'은 수분양자의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리 등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며, 입주인 및 타인 등 출입을 제한합니다.  
 완성된 식품 및 다과류의 취식, 유산소 운동, 유실수 식재, 원예작물 및 야채류의 재배, 독서, 일반적인 담소 행위 등 허용되나, 취사, 반려동물의 사육 및 동반, 방뇨, 세탁물 건조, 물품의 야적, 도박, 음주, 흡연, 고성방가, TV시청, 음향기기사용, 미풍양속 저해행위와 악취를 풍기는 행위 등 입주인의 생활에 침해될 수 있는 일체행위는 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1층세대 전용정원' 관리규정 위반 시 경,중을 고려하여 1차 경고하되, 계속하여 위반 시에는 기 설치된 시설물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철거한 후 일반 조경시설로 원상 복구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 부과 시 병행 부과하고, '1층세대 전용정원' 세대의 잔여기간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향후 '1층세대 전용정원'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은 금지합니다.  
 본 아파트 1,409세대 중에서 각 동의 1층 30세대의 세대 전면과 연접한 조경면적(각 타입별 해당세대의 조경면적은 실제 시공시 지면지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데크,유실수,잔디를 식재하는 등 조경을 특화하여 '1층세대 전용정원'을 조성한 다음, 합법적인 장기임대차방식으로 '1층세대 전용정원'의 관리 권한을 1층 수분양자에게 부여합니다.  
 '1층세대 전용정원'의 임대기간은 70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는 일금 일천이백육십만원(W12,600,000원)으로 하며, 임대료는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는 아파트 계약서의 연체율과 동일하게 적용됨)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단,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임대료는 반환이 불가하며, 소멸성으로 임대기간 경과에 비례하여 차감됨)

		<p>‘1층세대 전용정원’ 임대료는 아파트 공급대금의 일부로서 잔금납부(입주) 시 <b>별도 지정계좌</b>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은 임주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민·형사 상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사업시행자(주식회사 영종하늘도시2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1층세대 전용정원’ 임대료를 분양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차후 수분양자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고 <b>본 아파트 입주인(수분양자)</b> 전부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본 아파트 입주인(수분양자) 전부가 임대수익자의 권리를 갖습니다.</p> <p>‘1층세대 전용정원’ 수분양인이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대표회의’ 통제 하에 자기부담으로 기시설물을 철거하고, 일반조경시설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납부한 임대료를 상환받지 못합니다.</p> <p>‘입주자대표회의’는 ‘1층세대 전용정원’ 수분양자(임차인)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사용권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다만,부득이한 경우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약의 절차에 따릅니다.(이러한 경우 관계법에 따라 ‘1층세대 전용정원’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함).</p> <p>‘1층세대 전용정원’ 세대의 관리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p> <p>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시 입주예정자에게 관리규정 등 임대 관한 사항들을 반드시 전부 인계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인계한 사실을 명시합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 1부를 동 대표회의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는 ‘1층세대 전용정원’ 세대의 매매 및 임대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1층세대 전용정원’에 별도 전기관련시설(조명,콘센트 등) 및 수전관련시설(수도 등) 등 미설치 되며,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기타 입주자모집공고 등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들은 주택전시관 내 ‘1층세대 전용정원’ 관리규정(예시)이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배포되는 ‘1층세대 전용정원’ 관리규정에 따릅니다.</p>
		<p>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창호가 설치되는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p> <p>본 단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의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향후 예비 소음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b>방음벽 등의 높이, 형태, 재질 및 위치는 지자체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한해 방음벽의 설치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p> <p>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خم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사이버 주택전시관의 VR동영상 및 유튜브 영상은 주택전시관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과 별도 유상옵션이 포함된 영상임으로, 계약 전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주택전시관 상의 전시품목 및 유상옵션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주택전시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p> <p>주택전시관에 <b>84AT</b> 유닛가 건립되어 있으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에 대해서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VR 동영상과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p> <p>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b>마이너스 옵션</b>)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랍니다.</p> <p>주택전시관 내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시 제외됩니다.</p> <p>세대 현관문을 외부의 주택전시관 공용출 마감은 제품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p> <p>주택전시관에는 일부 벽체가 전시용 유리파티션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일반 벽체로 시공되므로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전시관에 세대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사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비기기 :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약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li> <li>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li> </ul> </li> </ul> <p>주택전시관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무상옵션품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택전시관내 설치된 CCTV는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약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p> <p>카탈로그 및 주택전시관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시설물(공용계단,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p> <p>주택전시관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주택전시관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p> <p>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주택전시관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p> <p>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어커티는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냉방전용 시스템어커티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p> <p>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스마트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원패스, 현관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p> <p>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경 외부공간 모형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시공사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식재,시설물의 위치 및 포장마감, 포장패턴, 난간대 높이, 디테일, 석재나누기, 사이즈 등)</p> <p>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TYPE)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명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주택전시관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한 안내를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주택전시관 내 본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1층세대 전용정원’ <b>관리규약</b> 등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p>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원)

구분	항목	금액(원)	비고
택지비	택지 공급가격	147,282,088,079	
	택지비 가산비	13,221,383,706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제세공과금(취득세,재산세,교육세 등),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b>소계</b>	<b>160,503,471,785</b>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346,429,660,462	-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50,712,095,072	-법정초과복리시설 설치비용, 홈네트워크,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환기설비,정보통신, 분양보증수수료 등
	<b>소계</b>	<b>397,141,755,534</b>	
<b>합계</b>		<b>557,645,227,318</b>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항 목		공 종	금 액	비 고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47,282,088	
		기간이자	1,124,135	
		필요적 경비	7,287,536	
		그 밖의 비용	4,809,713	
		계	1,60,503,472	
공사비	토목 (13개)	토공사	2,606,748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30,088	
		옹벽공사	266,551	
		석축공사	-	
		우, 오수공사	704,745	
		공동구공사	309,563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415,981	
		도로포장공사	781,479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84,927	
		정화조시설공사	262,916	
		조경공사	11,757,728	
		부대시설공사	731,600	
	건축	공통가설공사	5,746,084	
		가시설물공사	9,978,363	
		지정 및 기초공사	4,128,512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68,664,137	
		용접공사	-	
		조적공사	6,606,123	
		미장공사	6,262,396	
		단열공사	1,496,781	
		방수, 방습공사	2,769,906	
		목공사	5,161,315	
		가구공사	6,950,571	
		금속공사	5,987,126	
		지붕 및 환통공사	68,818	
		창호공사	9,892,593	
		유리공사	1,513,986	

항 목		공 종	금 액	비 고
공사비	건축	타일공사	3,870,986	
		틀공사	6,108,097	
		도장공사	2,666,680	
		도배공사	1,307,533	
		수장공사	4,610,775	
		주방용구공사	7,656,131	
		잡공사	3,143,096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2,246,461	
		급탕설비공사	2,246,461	
		오배수설비공사	8,198,124	
		위생기구공사	3,851,076	
		난방설비공사	6,564,334	
		가스설비공사	1,225,342	
		자동제어설비공사	1,050,293	
		특수설비공사	525,147	
		공조설비공사	3,267,580	
		전기설비공사	20,587,512	
		정보통신공사	8,807,492	
		소방설비공사	11,009,365	
		승강기공사	2,807,388	
	그밖의 공종	일반관리비	11,009,365	
		이윤	6,880,852	
	그밖의 공사비	계	273,019,127	
		설계비	3,925,917	
	간접비	감리비	5,716,229	
		일반분양시설경비	13,212,443	
		분담금 및 부담금	29,083,212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21,472,731	
		계	73,410,533	
		그 밖의 비용(제14조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더해지는 비용)	35,488,068	
	합계	542,421,200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4,046,761,400	
소방,통신감리	㈜영설계엔지니어링	989,560,000	
전기감리	㈜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654,319,8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	㈜영종하늘도시2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엘이앤씨(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법인등록번호	131111-0566611	110111-7736808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379,694,840,000원	제 07812021-101-0000200 호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함.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금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3. 보증 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음.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음.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 등)**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01.29(금) GRAND OPEN(사이버 주택전시관 운영)

특별공급: 2021.02.15(월)    1순위: 2021.02.16(화)    2순위: 2021.02.17(수)    당첨자발표일: 2021.02.23(화)

## 총 1,409세대

분양문의 1811-1409

| 전용 | 84㎡A, 84㎡B, 84㎡C    98㎡A, 98㎡B    84㎡AT, 84㎡CT    98㎡AT, 98㎡BT |

- 사이버 주택전시관: <https://www.elife.co.kr>
- 주택전시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